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추진 경과

양승현 연구위원

규제 특례를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올해 4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동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및 규정안을 입법예고함. 그리고 그와 동시에 88개 회사, 105개 서비스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 중에 있음. 금융위원회는 우선심사 대상자 선별 등으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법이 시행되는 4월 중순 경에는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후로도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이 그간 규제에 의해 답보상태에 있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분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지속적 정책 추진과 더불어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되어 올해 4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¹⁾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하 ‘운영규정안’)²⁾이 최근 입법예고 됨

-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법 시행 직후 1차 지정을 완료하고 동시에 2차 지정 신청접수를 받기로 하는 등 적극적이고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간 규제에 답보상태에 있던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현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를 받아 이미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에 대해 지정을 신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3월 중 우선심사 대상자를 확정하여 법이 시행되는 4월 중순에는 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 전망함
- 지난해 12월 24일 리포트³⁾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데 이어, 본고에서는 시행령안 및 운영규정안의 세부내용을 개관하고, 그 간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자 함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53호(의견제출 기간 2018년 12월 31일~2019년 2월 11일)

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54호(의견제출 기간 2018년 12월 31일~2019년 2월 11일)

3) 양승현(2018),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검토」, 『KIRI리포트』, 제460호

-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i)기타 금융 관련 법령, 금융업 및 금융회사등의 범위, (ii)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iii)손해배상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iv)기타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 위탁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규제특례의 범위)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시행령안 제2조)
 - 특별법에 열거된 34개 금융 관계 법률⁴⁾ 외에 예금자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⁵⁾ 및 금융 관련 법령의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기타 규정을 추가함
- (금융업의 범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핀테크 업무를 추가함(시행령안 제3조)
 -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 제공, 동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관리,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기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이바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로 규정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을 추가함(시행령안 제4조)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의 구성, 위촉위원 임기,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사유,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시행령안 제5조 내지 제8조)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함(시행령안 제10조)
 -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심사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⁶⁾을 포함함
 - 심사위원 제척사유가 ①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및 ②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다소 좁게 규정됨⁷⁾
-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유 및 증빙자료, 손해배상계획서(금전배상 원칙)를 제출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시행령안 제12조)
- (분쟁처리) 사업자는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공시하여야 하며, 분쟁처리신청이

4)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동법 제22조 제1호, 별표)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무역보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특별법 제26조

7) 해석상 심사위원이 과거에 속했던 법인이나, 심사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아닌 기타 단체 등과 관련하여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은 제척사유에서 제외됨

있을 경우 30일 이내 조사·처리 결과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함(시행령안 제13조)

- 운영규정안은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i)금융업 및 금융회사등의 범위, (ii)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 (iii)규제신속확인 처리절차, (iv)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설치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v) 위탁테스트 수행에 대한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업의 범위) 보험업법 및 은행법 상 자회사 영위 가능 업무 및 전자자금이체업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등⁸⁾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함(운영규정안 제2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격) 시행령에 정한 것 외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신청자격을 인정함(운영규정안 제3조)
- (금융소비자 보호) 심사기준 중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법 제13조 제4항 제7호)의 세부항목으로 ①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방안 및 ②해당 서비스 관련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⁹⁾함(운영규정안 제5조)
- (규제신속확인 처리절차) 규제 신속 확인의 공동신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반려 및 회신내용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예 관한 운영규칙」의 일부 규정을 준용함(운영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설치 및 자문단 운영) 지정대리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심사위원회 지원을 위한 자문단 운영,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 체결 시 금융감독원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운영규정안 제16조 내지 제29조)
 -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및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에 4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 (위탁테스트를 위한 업무수탁) 금융회사가 예비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를 수탁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금융관련법령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확히 함(운영규정안 제30조 내지 제32조)

-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올해 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를 실시¹⁰⁾하였음

- 총 88개 회사(금융회사 15개사, 핀테크기업 73개사)가 105개 서비스에 대해 제출(금융회사 27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78개 서비스)함¹¹⁾

8)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9) 1.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방안, 2. 해당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방안

10) 1월 21일부터 1월 31일 기간 중 실시함

- 보험 관련하여 규제 샌드박스 신청된 내용 중에 주요 규제 내용으로는 보험판매 시 녹취·설명 의무 관련 사항 및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 규제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었음
 - 효율적 심사를 위해 2월 중순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무자 심사를 통해 최대 40건의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고, 2월 하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사전 구성에 착수하여 3월말에는 최대 20여건으로 우선심사대상을 확정할 계획임
 -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은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¹²⁾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함
 - 금융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법 시행 후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최초로 이루어질 전망임
- 금융위원회는 이성과 같이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특별법 통과 후 3차례의 설명회¹³⁾를 여는 등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 1차 지정신청에 105건이 신청된 점으로 그간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 및 그에 따른 사회변동을 반영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특별법의 시행으로 시범운영 사례가 축적되고, 그로 인해 규제가 변화되며, 변화된 규제가 다시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지속적 정책 추진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등 관련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kiri](#)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2. 7),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등 향후계획”, p. 10

12) 지급결제·송금, 자본시장·로보어드바이저, 보험, 마이데이터·빅데이터·신용조사업, 블록체인 등 분야별로 대표적 과제를 선정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에도 적절히 안배할 예정이라 함(위 보도자료 5면 참조)

13) 서울 지역에서 1월 16일 및 1월 25일 2회, 부산·경남 지역에서 2월 15일 1회 개최함